

# 주택화재 종합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2004.10



#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선택에 성실히 보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 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보험 약관	고객 안내사항
•목 차	• 보통약관	· 개인신용정보 제공 ·
•보험용어 해설	• 특별약관	이용 고객권리 안내문
• 주요내용 요약서	·별 표	• 주요 전화번호 / 주소
· 가입자 유의사항		
•본 상품 주요내용		

☞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1
보험용어 해설 I- 3
주요내용 요약서 I- 5
가입자 유의사항 I- 9
주요내용 I - 1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I$ - $21$
<참고> 특별약관 색인 II- 1
<참고>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Ⅲ- 1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 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보험료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나이

-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은 버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 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 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 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 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의 무효(재물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무효(배상책임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의 소멸(재물보장 관련)

지급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 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괴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위권(재물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 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대위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 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 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재물 관련 보장 등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 보상합니다.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 재물 관련 실손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 관련 실손보상이란 교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가한 손해 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 품(담보)을 말합니다.(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상해 관련 보장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중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주요내용

####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 Q1) 도난손해 특별약관은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눠지는데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A1) 명기가재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목
  - 적을 말하며 명기가재에 해당하는 보험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일반가재는 위에서 정한 명기가재 이외의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2)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 일

자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 가입자격제한

- ①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은 주택용 화재보험입니다.
- ②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가입 나이
기 본 계 약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선 택 계 약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 특수건물 정수재손해 · 특수건물 신체순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도난손해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추유장해(80%이상) · 가족화재벌금 · 강력범죄 위로금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전기납	만19세 ~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만20세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sup>12</sup>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및 (신)6대가전 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15년인 경우 보험 기간은 10년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 상품구조

계약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

#### □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상해 및 비용 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중합보험 입니다.
- ③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④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 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 ⑤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 ⑥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 본 계 약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 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 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가입금액 한도
선 택 계 약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발생시(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 함)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 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명당)  사망 1억5,000 만원 한도 후유 1억5,000 장애 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 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대인(1병당):  사망 1억원 한도 후유 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도난 손해	명기 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증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 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선 택 계 약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화재 (폭발포함) 배상제외)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누수대물사고 50만원, 누수의대물사고 20만원
	화재 및 붕 괴 등의 상 해 사망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화재 및 붕 괴 등의 상 해 후유장해 (80%이상)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강력범죄 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 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족 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 (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1,500 제170조에 만원 의한 별금 한원 형법 2,000 제171조에 만원 의한 별금 한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 (1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 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 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 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日
선택계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이 전기적 ·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6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6대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생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신)6대가전제품이 전기적 ·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매년 100만원
하	(신)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신)6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 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 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신)6대 주택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가전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 제품 기,의류관리기,제습기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이 전기적 ·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12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 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 비용지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 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선 택 계 약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봉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환산액을 지급 (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0.9%]로 계산하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 최장 90日
57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 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 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업에 판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 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연(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sup>※</sup>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삿하지 않습니다.
- ②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 (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③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그 리고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 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음라갑니다.

####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 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갂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의 사업방법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V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20년 3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1.80%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 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적용위험률

####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 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단독주택 1급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화재손해	0.000211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0.000125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보험가격지수

####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은 무배당 상 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 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급되 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조회방법

o 인터넷: http://www.samsungfire.com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산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 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 신청방법

o 서 면: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1588-5114

o 인터넷: http://www.samsungfire.com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애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1588-5114
  - o 인터넷: http://www.samsungfire.com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9 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당사 고객정보 관리 · 보호 고충처리자
    - : 02-758-404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02-3702-85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 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 목 차

#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8
제1조 목적	8
제2조 용어의 정의	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
제3조 보상하는 손해	10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4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15
제6조 보험금의 청구	16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6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7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7
제10조 손해방지의무	19
제11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19
제12조 현물보상	19
제 13조 잔존물	19
제14조 대위권	19
제1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0
제16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21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2
제18조 주소변경통지	2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3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3
제2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23
제21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4
제22조 사기에 의한 계약	26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6
제23조 보험계약의 성립	26

제24조 청약의 철회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8
제26조 계약의 무효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9조 타인을 위한 계약	
제30조 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요	· 계약의 해지 .36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37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38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0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40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0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1
제40조 해지환급금	41
제41조 보험계약대출	42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42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43
제43조 분쟁의 조정	43
제44조 관할법원	43
제45조 소멸시효	43
제46조 약관의 해석	43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4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9조 개인정보보호	45
제50조 준거법	45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5

# 특별약관

1. 재물 관련 특별약관		48
1-1. 특수건물 풍수재선	e해 특별약관	48
1-2. 도난손해 특별약된	발	53
1-3.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58
1-4.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64
1-5. 임대인(화재 및 퉁	·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68
2. 배상책임 관련 특별	· 약관	74
2-1. 화재(폭발포함) 비	H상책임 특별약관	74
2-2. 임차자(화재,폭빌	· 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88
2-3. 특수건물 신체손히	H배상책임 특별약관	96
2-4. 특수건물 화재대물	吕배상책임 특별약관	103
2-5. 가족 일상생활중 [	배상책임II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111
3. 상해, 비용손해 관	면 특별약관 일반조항	120
3-1. 상해 관련 특별약	<u> </u>	140
3-1-1. 화재 및 붕괴 등	의 상해 사망 특별약관	140
3-1-2. 화재 및 붕괴 등	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146
3-1-3. 강력범죄 위로귿	등 특별약관	154
3-2. 비용손해 관련 특별	별약관	159
3-2-1. 가족화재벌금 특	별약관	159
3-2-2. 민사소송 법률비	용손해 특별약관	164
3-2-3. 12대가전제품 고	장수리비용 특별약관	175
	장수리비용 특별약관	
3-2-5. (신)6대가전제품	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189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98
[별표2] 장해분류표		199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	
[zw-mosadel]	지급보험금표	
[늴표-매상색임관련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정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232

[별표-배상책임관련3]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240			
[별표-배상책임관련4]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243			
[별표-배상책임관련5]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보험금표251			
[별표-비용관련1]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259			
[별표-비용관련2] 「민	!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260			
[별표-비용관련3]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261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	결약관264			
2 지전대리청구서비스	· 틀병약과 266			

# 보통약관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 (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 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3.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을 말합니다.

# ② 보상 관련 용어

-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2.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

- 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4.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 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6.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 ⑤ 보험료 관련 용어

-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 니다.
-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 보 현 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 라 합 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 「붕괴 등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 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과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과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에서 보장하는 화재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 물 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 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_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 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장하는 화재손해 위험 및 붕괴 등의 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①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 ⑧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 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 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 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 ⑨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 가재
    -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 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 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 니다
-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 난 또는 분실
  -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 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

- 의 목적에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 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 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 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 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 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 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 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 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 합니다.

#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 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제10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11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12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 습니다.

# 제 13조 (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 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1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1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 V(이하 「공시이 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 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 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합니다.

# 제16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만기환급금의 수익자(이하「만기수익자」라 합니다, 만기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만기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 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8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제2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0조
     (계약후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임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①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제2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3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4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한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ㆍ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ㆍ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 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6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적 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만기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만기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만기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변경 전 만기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만기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만기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8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 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제30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 손해 또는 붕괴 등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 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 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인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 하고 다수인 보험의 목적 전부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 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 26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할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보헊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 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이 최초계약 청약시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는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 용됩니다.

#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40조(해지환급금)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7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집행법원의 결정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 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 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 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제40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41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9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5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 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

OF OF STURE STURES OF STUR

※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1. 재물 관련 특별약관

# 1-1.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 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3.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 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 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 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 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 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 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 합니다.

###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제5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 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 후 보험의 목적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 환급 또는 추정의 기준시점

- 1.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안전점검 시점
- 2. 적용요율: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 1-2. 도난손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의 목적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 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 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도난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도난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 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6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 다를 포함한 전용면적 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 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 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 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④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 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에 한합니다.
  - 1. 가재
  - 2.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 가.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 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 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나.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 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주포>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3.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 4.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 긴 도난
- 5.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6.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 난
- 7. 보험의 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 8.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 제3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 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 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 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5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 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 합니다.

##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 니다)를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근애덕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 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제6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 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7조 (도난품의 귀속)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0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 1-3.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의 목적 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 재손해」라 합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해」 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합니다.
  -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 정에서 발생한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 1.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 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3.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④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 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 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 니다
  -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 ⑤ 제3항 및 제4항 외에 가재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 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 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 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제3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과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이하 같습니다)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재조달차액」이라합니다)을 보상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 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 3.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 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적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근에 ㅋ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근애작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1-4.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배당 삼성 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약정복구기간: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 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 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 ② 추정복구기간: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 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복구기간: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합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해」라합니다)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 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 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 다
-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임시거주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의 목적이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화재손해 또는 붕괴 등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첫날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 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 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화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1-5.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무배당 삼성 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약정복구기간: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 구기간으로 90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 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 ② 추정복구기간: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 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복구기간: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이하「보험의 목적」이라합니다)에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합니다)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이하「붕괴 등의 손해」라합니다)가발생함으로써 임대해 준 보험의 목적 내에 임차인이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의 원상 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 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의 임대료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을 임차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말하며 아래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사용요금 및 소모성 관리비
  - 2. 권리금, 사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일시금

④ 제1항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손해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임대료 손실 보험금
    - =임대료 월 환산액 × (복구기간 일수 ÷ 30일)
- ② 제1항의 임대료 월 환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1.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0.9%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③ 제1항의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복구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④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근에딕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 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 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 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 ① 계약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②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2.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3.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4. 보험금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 합니다.
- 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6.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

- 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⑤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이하「신체장해」라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용어풀이>

「폭발」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 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 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8.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 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애」라 합 니다)가 생긴 때에는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 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 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와 제2호 금액을 더한 금 액
  -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 가 생긴 경우에는 위 제2호와 제3호 금액을 더한 금액

- 6. 위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위 제1호의 금액에서 위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 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7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다 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8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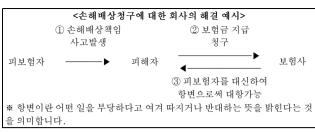
### 제9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10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1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5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0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 2-2.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 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 기. 퍼포함자가 제7조(근해 8자리 + ) 제1 8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 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합니다.

#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
     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했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7.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 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또는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6.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배상책 임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2항 제1호 및 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의 시 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 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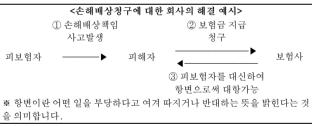
# 제7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 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해당액 이하 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 으며,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 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 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 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2-3.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무배당 삼성 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2-1.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②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우 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 합니다.
- ③ 타인: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수건물의 화재 및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 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 해야 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 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고의나 법령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
   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위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별표-배상 책임관련3] 참조)
  -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 목의 비용: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 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다수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 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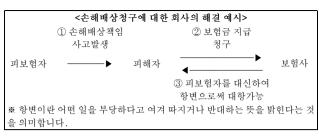
# 제7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9조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재(폭발포함)배 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2-4.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무배당 삼성 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2-1.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②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우 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 합니다.
- ③ 타인: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수건물 (이 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 및 폭발, 파 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이하「손해」 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 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해자 고의나 법령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 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 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 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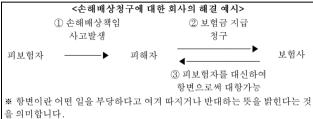
피보험자가 다수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 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7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9조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0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화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 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재(폭발포함)배 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2-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II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 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 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 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 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되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 <관련법규>

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 니다.
- 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 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 임
  -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 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 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 11.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12.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1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금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 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의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 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를 지칭합 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 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 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 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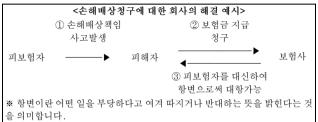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 제5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6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2-1.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과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 자의 상해 및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해당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⑤ 보험료 관련 용어
  - 1. 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확인서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 제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6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제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
-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 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 가용으로 변경 등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 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특별약관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 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 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 제1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 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9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제1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 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 니다

####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3조 (특별약관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

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의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14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 제1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 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

-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진 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특별약관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약관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 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보통약 관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을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 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약관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3조(특별약관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집행법원의 결정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별 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 제2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1. 상해 관련 특별약관

3-1-1.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화재사고」라 합니다) 및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하「붕괴 등의 사고」라 합니다)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화재사고 및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 2. 피보험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 3.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 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 고로 인한 신체상해
- ③ 제2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 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 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방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제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 험(2004.10)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이하「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 항」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1-2.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화재사고」라 합니다) 및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 고(이하「붕괴 등의 사고」라 합니다)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2]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80%이상)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을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이라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화재사고 및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 2. 피보험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 3.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 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 고로 인한 신체상해
- ③ 제2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 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 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 다.
-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방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제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 험(2004.10)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이하「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 항」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 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 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1-3. 강력범죄 위로금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 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 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 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 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 는 이에 가당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5.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 변 중에 생긴 손해
-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 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법원 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 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 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3. 사고증명서(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진료비계 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②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역되는 경우
-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무배당 삼성화 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상해, 비 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10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 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3-2.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3-2-1.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 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보상한도액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관련법규>

#### ※ 형법 제 170조(실화)에서 정한 죄

: 과실로 인하여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합니다.
-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3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되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 <관련법규>

- ※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 8족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 화
-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 험(2004.10)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이하「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 항」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

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 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없습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2-2.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 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3조(보험금등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심급 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 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 용어풀이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구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은 제외합니다)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제2조 (법률비용보험금)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 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비용관련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

- 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 표-비용관련3]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 참조) 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은 일부승소, 전부승소와 같이 소송결과 및 송달료 또는 인지대 환급액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 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변호사비용	인지액+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10만원 자기 부담금 공제)	500만원 한도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단, 소송상대방의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소의 각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 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7.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 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 8.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 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 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 된 소송
- 9.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에 따라 제기된 소송
-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 11.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 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 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 14.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 15.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 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 16.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 ※ 용어풀이

용어	정의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 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 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 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 이 발생한 경우
  -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 지 않습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 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 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서 등)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 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별표1]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9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 결과(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10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 3-2-3.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하「주택」이 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 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 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 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 다.
-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 · 기계적 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 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 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12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 ⑤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⑥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 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 금액, 실제 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①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가족 또는 이들의 법정대 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 용으로 인한 손해
  -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 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 에 대한 손해

-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 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 는 그 밖의 손해
-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 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11.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 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 한 비용 손해
-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 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 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8.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19. 전기적 · 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 는 사용 중인 물품
  -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3.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4.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되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 <관련법규>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 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무배당 삼성화 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상해, 비 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제10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 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없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2-4.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하「주택」이 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 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 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 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 · 기계적 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 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 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 자레인지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 에 한합니다.
- ⑤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⑥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 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 금액, 실제 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①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 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가족 또는 이들의 법정대 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 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 용으로 인한 손해

-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 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 에 대한 손해
-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 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 는 그 밖의 손해
-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 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11.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12.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 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 한 비용 손해
-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 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

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8.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19.전기적 · 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 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 는 사용 중인 물품
  -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3.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4.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 <관련법규>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 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역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3. 상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상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었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2-5.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하「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신)6대가전제품의 제품보 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 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 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신)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 ⑤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⑥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 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 금액, 실제 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①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 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가족 또는 이들의 법정대 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 용으로 인한 손해
-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 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 에 대한 손해
-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 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 는 그 밖의 손해
-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 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11.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12.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 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 한 비용 손해
-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 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 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8.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19. 전기적 · 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 는 사용 중인 물품
  -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3.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4.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 <관련법규>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 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무배당 삼성화 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2004.10) 3.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제1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없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상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2004.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별 표

سين منه عامين منه عامين منه عامين منه عامين و يوسي منه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و يوسي منه و يوسي م

# [별표1]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	터 60일이내 기간	+가산이율(4.0%)
보험금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	보험계약대출이율
	터 90일이내 기간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	보험계약대출이율
	간	+가산이율(8.0%)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1년이내 :
만기환급금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공시이율의 50%
및	의 기간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 합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상해ㆍ질병 관련 보장에 한합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별표2]

# 장해분류표

#### <총 칙>

#### 1. 장해의 정의

- 가.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 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 다.
- 다.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라.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마.위 라.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⑩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 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 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다.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 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 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마.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10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 (Hand Movement)<sup>주1)</sup>, 안전수지(Finger Counting)<sup>주2)</sup>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 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 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 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 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금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형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45
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상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 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한다.
- 굿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 라. 평형기능의 장해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소견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소건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20
기능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	12
	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8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되영상검사(CT. MRI)
  - 나)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 해의 지급률을 한사하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40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10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 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 (박,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 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 혈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 태
-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 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 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 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 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 나)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 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 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장해판정기준

- "외모"라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혼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혼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 미만의 반혼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항몰
- 라)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1)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 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 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 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 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 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강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 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 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어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 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 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7. 체간골의 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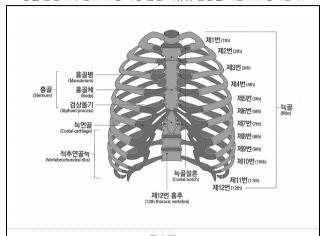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	15
	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10
	을 남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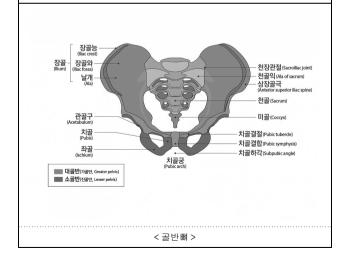
#### 나,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녹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녹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20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10
ш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5
CH CH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 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 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 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 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하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항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 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 료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 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 다.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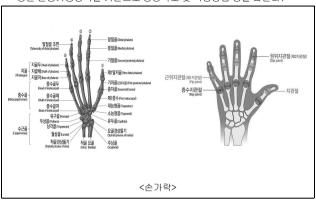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히 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10
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 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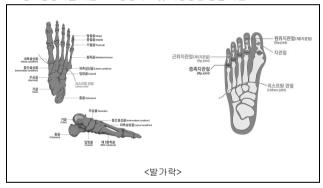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	5
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8
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3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 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 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 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하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12. 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 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혈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 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 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다.
-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 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 다.
-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하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sup>주)</sup>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 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② 적절한 음식섭취, ④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⑤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②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⑥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 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 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 자)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 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치매

-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 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 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 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 하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0.71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 동 동작	<ul> <li>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li> <li>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li> <li>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li>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 배뇨	<ul> <li>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li> <li>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15%)</li> <li>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li> </ul>
목욕	<ul> <li>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li> <li>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옷입고 벗기	<ul> <li>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li> <li>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li> </ul>
1	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별표-배상책임관련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1급 2,0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항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항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수술
5. 두개골의 함물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훈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또는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개두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는 손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이상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심한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비술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CC 1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또는
2u   1,000 d d   1.8 a d d d d d d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	는 부
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 –
말하다)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3급	1,0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
		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
		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
		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
		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
		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우를 말한다)
		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io. o c 페르노 단이어는 모이글 모든 표모 페르노 표모이 형술을 시행한 부상
		영울을 시청한 구성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
		상 그 바에 2구에 헤다하다그 이저다는 보사
ĺ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표면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
		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
		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
		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
		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
		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
		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
		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
		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
		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7급	500만원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500만권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2. 그런을 데꾀을 또는 되꾀을 물을 지 않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0. 영국를 당파구르고 물물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
		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
		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
		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
		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
		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
		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
		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
		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
		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
		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100 L L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
		다)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 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별표-배상책임관련2]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후유 장애 등급	한모 금액	후유장애 내용
1급	1억원	<ol> <li>두 눈이 실명된 사람</li> <li>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반신불수가 된 사람</li> <li>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두 다리를 우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ol>
2급	9,000만원	<ol> <li>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ol>
3ដ	8,000만원	<ol> <li>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모 된 사람</li> <li>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일생 동안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li> <li>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ol>

- 0		
후유	한도	
장애		후유장애 내용
등급	금액	
	7 000 01 01	1 E FOLUMAN DE O OCOUNT DE LUIZA
4급	7,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
		은 사람
5급	6.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07	5 000 EL OL	
6급	5,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후유 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7급	4,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명한쪽 함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감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급	3,000만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당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후유 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9日	2,250만원	<ol> <li>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li> <li>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li> <li>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li> <li>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li> <li>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후유		
장애	한도	후유장애 내용
	금액	후ㅠㅎ에 대통
등급	1 000 51 01	4 2 4 4 9 4 9 9 9 9 9 9 9 9 9 9 9 9 9 9
10급	1,88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가 남은 사람
		기 당근 자님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445	4 5005101	애가 남은 사람
11급	1,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후유 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2급	1,25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엉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급	1,000만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아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랑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생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9. 한쪽 11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지하고 있다면 받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에 약 생 만 윤 성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3. 연속 취의 정역에 1미터 이정의 거리에서는 모동의 될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 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용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 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 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별표-배상책임관련3]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6 시행(법률 제16272호, 2019.1.15., 타법개정)

#### 제8조(보험금액)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
    -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나.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2017.10.19 시행(대통령령 제28385호.2017.10.17.. 일부개정)

#### 제5조(보험금액)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배상책임관련】(신체손해배상 책임위험률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 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 하「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배상책임관 련】(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 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 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 2. 청구액과 지급액
  -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017.10.19 시행(총리령 제1423호, 2017.10.19., 일부개정)

#### 제2조(손해액)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 2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 . 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 2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 손실액

# [별표-배상책임관련4]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1급	3,0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
		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
		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4 500 81 61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
		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0. 녹씬열루 물열과 물결성 물구가 동안된 무성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역을 전구 글을써 표글 글구 불구가 중인된 구성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0. 년8월 년 년월 월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0. 글랜글 단 구립자단데 및 데디푸단데 퍼글퍼 데되그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ı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3급	1,2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
		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
		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
		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
		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
		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적출
		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
		상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4급	1,0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표면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
		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
		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
		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
		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
		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비골 아래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6급	7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
		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
		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
		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
		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7금	500만원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300 E E	1. 또이의 당시 당단을 들을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8급	30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
		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
		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
		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
		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
		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
		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
		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
		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
		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D. 석우세간 전월두 참좌도세 그 무근의 연두소석(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근육 등을 포함한다) 근성이 중한된 구성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
		이. 원선물 할 수(표절, 건축뼈 원물 할 수, 수근한 원물 될 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구 및 이 표적을 만을 들구들 도움인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4. 미글 글글도 구돌아시 ほ는 구멍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10. 글런글구 한대의 구군 파글도 구불을 시청하지 않는 5 우
		ㅜ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200만원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
		다)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 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별표-배상책임관련5]

신체손해배상책임위험률의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보험금표

후유	l	
	한도	= 0 T = 1 U O
장해	금액	후유장해 내용
등급	ſ	
1급	1억5,000만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원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원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무지도 모오늘 일어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4010 00001	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000만	
	원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 ,5502 2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
		은 사람

후유 장해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해 내용
5급	9,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랑
61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랑

후유 장해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해 내용
7급	6,000만원	<ol> <li>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li> <li>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li> <li>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li> <li>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한쪽 말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ol>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강 주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가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원 한쪽 팔의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후 장 등	해	한도 금액	후유장해 내용
97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점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1			로 제한된 사람

<u>= 0</u>		
후유 장해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해 내용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0. 전략 논의 올쎄근가락을 앓는 사람 모든 당시는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
		단독 본의 점시본가락과 출째본가락 되되고개의 본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후유 장해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해 내용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급	1,500만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랑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생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지하고 받가락이하의 발가락이 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하 장 대 다 장 대	한도 금액	후유장해 내용
144TI	1,0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랑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 후유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 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용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 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 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별표-비용관련1]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 소무점이 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소송목적의 값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8%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57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6%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0%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4%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476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O EN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0.5%		

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 [별표-비용관련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0.5%	
1천만원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1억원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0%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별표-비용관련3]

#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

심급		송달료	
	민사소액	94,000원	
1심	민사단독	141,000원	
	민사합의	141,000원	
항소심		112,800원	
상고심		75,200원	

주)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مخ عامين محروبي محروبي و يوسين عامين يوسين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 (보험료납입)

-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 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 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 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 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 부(기본증명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

- 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 특별약관 색인

nž dožine žanž d – Želož dožine ža

## 특별약관 색인

<기호 및 숫자>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189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175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182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특별약관.111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159
강력범죄 위로금 특별약관154
<l></l>
해당없음
<=>
도난손해 특별약관53
⟨₴⟩
해당없음
< <p>&lt;<p>&lt;<p>&lt;<p>&lt;<p>&lt;<p>&lt;<p>&lt;&lt;</p></p></p></p></p></p></p>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164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159
< <b>^</b> >
상해 관련 특별약관140
<0>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특별약관68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88
< <i>x</i>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58
<*>>
해당없음

## **(**7)

해당없음

くヒン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9 6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의	f관	. 48
특 수 건 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103

## <π>

해당없음

## **く**き>

화 재	및	붕 괴	등 의	상 해	사 망	특별약관				 140
화 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	해(80%이	상)	특별익	:관	 146
화 재	및	붕괴	등의	임시기	거주비	(1일이상)	특별	별 약 관		 64
화 재	( 폭	발포후	) 바) 배	상 책 역	임 특별	별약관				 7 4

## <갱신형>

해당없음

# <참고>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법규1] 의료법표 - 3
[법규2] 의료급여법 시행령 Ⅱ - 4
[법규3] 의료법 시행규칙 □ - 5
[법규4] 상법 Ⅱ - 6
[법규5] 민법
[법규6] 전자서명법 Ⅱ - 7
[법규7] 소비자기본법 Ⅱ - 8
[법규8] 자동차 관리법 □ - 9
[법규9]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Ⅱ - 9
[법규10]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Ⅱ - 10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0
[법규12] 도로교통법 Ⅲ - 11
[법규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
[법규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Ⅲ - 12
[법규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Ⅲ - 14
[법규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Ⅲ - 15
[법규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Ⅲ - 17
[법규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령)Ⅲ - 17
[법규19] 민사소송법
[법규20] 형법 III - 20
[법규2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Ⅲ - 26
[법규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Ⅲ - 29
[법규24] 건설기술 진흥법 Ⅱ - 32
[법규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규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3
[법규27] 도시가스사업법 Ⅱ - 34
[법규28] 산업안전보건법 Ⅱ - 34
[법규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Ⅱ - 34
[법규30] 송유관 안전관리법 Ⅱ - 35
[법규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규32] 위험물안전관리법
[법규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Ⅱ - 36
[법규3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Ⅲ - 37
[법규35] 전기공사업법 37
[법규36] 주택법 37

[법규38] 지역보건법
[법규3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규40] 약사법 39
[법규41] 고용보험법 41
[법규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법규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규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Ⅱ - 44
[법규45] 국민건강보험법 44
[법규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5
[법규47] 공직선거법 48
[법규48] 한의약 육성법 1Ⅱ - 49
[법규4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Ⅲ - 49
[법규50] 공중위생관리법 51
[법규51] 도로법 51
[법규52] 식품위생법 52
[법규53] 아동복지법 52
[법규54] 영유아보육법 52
[법규55] 유통산업발전법 53
[법규56] 초·중등교육법 53
[법규5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규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Ⅱ - 54
[법규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 57
[법규60] 전기통신사업법 57
[법규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8

<sup>\*</sup>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정은 2020 년 3 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의료법

## 내용

####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남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 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럿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내용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 1. 삭제 <2005.7.5.>
- 2. 삭제 <2005.7.5.>
- ② 삭제 <2005.7.5.>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 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 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정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2017.12.29.>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2017.12.29.>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 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 의료법 시행규칙

#### 내용

####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 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개정 2020. 2. 28>

1~11(생략), 12~20(생략)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 과 진료과 목을 두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 만 갖춘다)	과 진료과 목을 두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				1 (탕전을 하는 경 우에만 갖춘다)	

####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개정 2019.9.27.>

- 1. (생략)
-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 (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는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 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 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
   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
   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법규4]

## 상법

## 내용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 역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 [법규5]

## 민법

### 내용

#### 제27조 (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 제777조(친족의 범위)

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이내의 혈족
- 2. 4촌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 [전문개정 1990.1.13.]

#### [법규6]

## 전자서명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 1. (생략)
  -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1.12.31.]

## 소비자기본법

#### 내용

####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사.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자동차 관리법

## 내용

####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 종자동차
- 다. 삭제 <2019.8.27.>
-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 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 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 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법규9]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내용

####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법규10]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내용

####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 [법규1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내용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 1. 덤프트럭
- 2. 타이어식 기중기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삭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 3. 27.>

#### (생략)

-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생략)

-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의 이륜자동차
  - 다.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 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생략)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규1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 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법규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내용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부하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 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 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 · 직행형 및 일반형 등 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전세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채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 ·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 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법규15]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 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 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 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 제16조(안전점검)

-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5>
  -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 [법규16]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 제2조 (특수건물)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 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은 제외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청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한계가 3천제곱미터이삿인 건물
  -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
- 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 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 · 창 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 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 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17.「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 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 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 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 하는 건물
-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 크실인 경우에는 충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충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 [법규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내용

##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개정 2016.1.7.>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7., 2017.1.17.>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 2. 삭제<2017.1.17.>
-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7.>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 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1.7., 2017.7.26.>
-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 [법규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시행령)

## 내용

####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6.]

####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 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임 이내
-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 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본조신설 2017.1.6.]

#### [별표 3] <개정 2020. 1. 7.>

####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 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 관
-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 「경륜·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9.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 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12.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민사소송법

## 내용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 제266조(소의 취하)

-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수 있다.
-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69조(반소)

-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불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판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홈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 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 제412조(반소의 제기)

-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 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규20]

## 형법

## 내용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70조(실화)

-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정 역에 처한다.

#### 제252조(촉 탁, 숭낙에 의한 살인둥)

-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강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 년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 제259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l></l></l></l><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 조의 죄를 범한 때에 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297조의2(유사 간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5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 의 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30조(야간주거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정역에 처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340조(해상강도)

-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짓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제42장 손괴의 죄

#### 제369조(상해, 존속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법규21]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 (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최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의 최
    -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 인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좌(「형법」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 범을 포함한다)
-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16조(수집·조사및 처리의 제한)

- ①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2018.12.11.>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 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 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 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 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 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 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외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5.3.11.>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 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규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9.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수 있다. <개정 2015.9.11.>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 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5.9.11.>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15.9.11.>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시행일 2016.3.12]]
  -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 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 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제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목적

-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 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③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 ④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 [법규24]

### 건설기술 진흥법

### 내용

#### 제85조(벌칙)

-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 31.>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규2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내용

#### 제38조(법칙)

- ① (생략)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 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합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 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내용

####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 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 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 호教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6.1.27.,2016.12.2.>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우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 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 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 [법규27]

### 도시가스사업법

### 내용

### 제48조(벌칙)

- ①~⑧(생략)
-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 10 ~ 13 (생략)

#### [법규28]

### 산업안전보건법

#### 내용

#### 제167조(벌칙)

-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부개정 2020.1.16.]

#### [법규2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내용

#### 제64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법규30]

### 송유관 안전관리법

#### 내용

#### 제13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 [법규3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내용

#### 제65조(벌칙)

-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손피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8. 20 〉
- ③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 ④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8. 20.>
- ⑥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2019, 8, 20.>
- ⑦~⑩(생략)

#### [법규32]

### 위험물안전관리법

### 내용

#### 제34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1.27.>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1.27.>

#### [법규33]

### 장기둥 이식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 제47조(벌칙)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 [법규34]

###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30조(벌칙)

- 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 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규35]

#### 전기공사업법

### 내용

#### 제41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법규36]

#### 주택법

#### 내용

#### 제98조(벌칙)

-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협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4.18.>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9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파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규37]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5조(과실범)

-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법규 38]

### 지역보건법

### 내용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법규3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내용

####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 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정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 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법규 40]

### 약사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 한다.
-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 다.
-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樂局 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 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 는 정제된 생약(生業)을 말한다.
-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 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 품을 말한다.
  -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 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 있도록 도와주는 것
-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터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 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樂動)·약력(樂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 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 18. "회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 가.「회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회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 다

#### [법규41]

## 고용보험법

###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 험료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 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 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이하 생략)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 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개 정 2019.1.15., 2019. 8. 27.>
  -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 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 정 2019. 8. 27.>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 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제51조(훈련연장급여)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 제52조(개별연장급여)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 제53조(특별연장급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 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 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임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1.7.21.]

#### [법규4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 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 (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 다.
  - 5.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를 막한다.
  -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 [법규4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내용

#### 제2조(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법규4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내용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 2. 영업 내용의 변경
  -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전문개정 2011.5.30.]

#### [법규45]

### 국민건강보험법

#### 내용

####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진찰·검사
  -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 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 지 못한다.

#### [법규4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용

### **[별표3] <**개정 2019. 10. 22>

####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 간별로 가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 의 금액은 버린다.
-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 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3. 본인부담상한액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지역가입자인 경우

구부	본인부담상한액	
1 2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 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1. 10.16.1 × 11.0.16.01					
구부	본인부담상한액				
1 2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 공직선거법

### 내용

#### 제222조(선거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 인·정당(후보자들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 조의 결정에 불복이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날(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 제223조(당선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 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합을 이유로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대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가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상 학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20.1.1.4.>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 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합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및 사·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자치구·시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합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 [법규48]

### 한의약 육성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樂事)를 말한다.
  -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樂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 ·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체된 생약(牛藥)을 말한다.
  -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법규49]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 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 거나 사용하는 시설

-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 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전문개정 2007.12.21.]

#### [법규50]

### 공중위생관리법

#### 내용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 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 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 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괴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 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8. 삭제 <2015.12.22.>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수 있다. <개정 2005.3.31.>

#### [법규51]

#### 도로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 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 [법규52]

### 식품위생법

### 내용

#### 제36조(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개정 2010.1.18., 2013.3.23.>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53]

## 아동복지법

### 내용

####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9. (생략)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생략)

#### [법규54]

### 영유아보육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5. (생략)

[전문개정 2007.10.17.]

#### [법규55]

### 유통산업발전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2. (생략)
-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16. (생략)

#### [법규56]

### 초·중등교육법

#### 내용

#### 제2조(학교의 종류)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전문개정 2012.3.21.]

#### [법규 57]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 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 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20. 3. 4>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歐)공통감염 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 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 합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혜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과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梅毒)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청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규(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큔(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6.~20. (생략)

####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 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 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6., 2018. 3. 27., 2020. 3.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 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3. 4.>
-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 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 [법규5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법규 60]

## 전기통신사업법

#### 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12.24>
- 1. (생략)
-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 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14. (생략)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 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삼성화재 전국 고객지원센터 주소

지역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	강북고객 지원센터	1588-5114	[ 0256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2층 (용두동)
	강남고객 지원센터		[ 062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삼성화재 역삼빌딩 12층 (역삼동)
	강서고객 지원센터		[ 07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6. 삼성화재 영등포사옥 1층 (양평동4가)
경기	경기고객 지원센터		[ 1648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 수원사옥 3층 (인계동)
대전	충청고객 지원센터		[ 35209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10층 (둔산동)
광주	호남고객 지원센터		[ 61964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상무사옥 1층 (치평동)
대구	대구고객 지원센터		[ 420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 대구사옥 3층 (범어동)
부산	부산고객 지원센터		[ 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화재 부산초량사옥 2층 (초량동)

<sup>※</sup> 전국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up>※</sup> 사고 통보 및 접수는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 혹은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588-5114** samsungfire.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2020.04. 장기상품개발팀 인쇄)